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환동해산업연구원 종합감사 -

2020. 8. .

처분요구일람표

1. 인사운영 부적정 (주의)
2.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시험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Ⅲ.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9. 10. 14. 계약연구보조원 3명과 시설관리원 1명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을 하면서 위 규정과 다르게 외부 시험위원 없이 ♡♡♡♡장, 담당부장, ■■■부장 등 내부직원으로만 서류전형을 하였다.

그런 뒤 같은 달 17. 면접전형을 하면서 서류전형에 참여한 ♡♡♡♡장, 담당부장, ■■■부장이 또다시 면접전형 시험위원으로 중복참여하였다.

이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33건의 직원채용시 시험위원 위촉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시험위원은 항상 중복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위원의 외부위원 참여 또한 1/2에 미치지 못하는 채용건이 대다수 확인되었다.

그 결과 시험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등 인사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

2. 서류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Ⅲ.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위 관서 「인사규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채용시험은 서류전형·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규정 제12조 및 [별표1] 과 「계약직원 임용규칙」 제3조와 [별표1]에 따르면 직급별 경력 및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책임연구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6급 이상으로서 총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등으로 직급별 경력과 자격기준을 기재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8. 2. 17. 향장제품관련 연구원 2명과 안전성검사 연구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면서 식품, 생물, 이공계 및 바이오 관련 학사 이상의 학력만을 요구하였고,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4. 9. 응시자 4명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당초 채용공고조건에 정한 자격에 부합하는데도 시험위원의 자기소개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등 주관적인 평가결과가 낮다는 사유로 ○○○○ 등 2명 만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2명은 주관적 평가점수가 낮다는 사유로 불합격처리 하였다.

그 결과 불합격처리 된 2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전형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 등 2명은 각각 단독으로 면접전형을 보게되는 등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이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33건의 직원채용시 당초 채용조건에서 정합 자격에 부합하는데도 시험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시행, 부당하게 면접전형 기회를 상실한 응시자를 확인한 결과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은

동일한 채용시험에서 시험위원을 중복 위촉하거나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 시키지 않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부 등
내 용

「회계규정」 제136조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예산편성 및 연봉제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I.예산집행 10대 원칙 ” , “ ⑥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경비 집행 ” 에 따르면 급여는 내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로도 지급할 수 없고,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고, 산업기술협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에 따라 연구수당 등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예산에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연구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때에는 위 국고보조사업비 사용 지침에 따르거나 직원수당규정 등 사규에 그 지급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대로 지급해야 하고 규정에 없는 연구수당을 편성 및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해양미생물활용 천연색소(인디고) 개발 등 13건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사규 등 편성근거도 없는 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뒤 원장을 비롯한 내부 직원 등에게 53,800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말았어야 할 연구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은

수당규정 내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구수당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